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일 : 2021. 03. 01.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경희대학교 (이하 ‘본교’ 라 한다) 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계약, 처우, 재임용, 승진, 업적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구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 함은 임용기간, 처우, 성과, 업무내용, 승진, 재임용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여 본교에 임용된 자로서 본 시행세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계약기간)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을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학기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계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제4조(처우)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연봉책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교양 또는 외국어 강의를 담당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연봉은 최종학위 및 경력, 책임강의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 신규 임용 시 연봉의 70% 이상 수준으로 책정하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2. 전공 강의를 담당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연봉은 최종 학위, 경력, 계약조건, 책임강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 신규임용 시 연봉의 80% 이상 수준으로 정하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3. 특정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된 자 또는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1호 내지 2호에도 불구하고 달리 처우할 수 있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연간책임강의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강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교양 또는 외국어 강의를 담당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 연간 24시간(3시간 기준 8강좌) 이상
2. 전공 강의를 담당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 연간 24시간(3시간 기준 8강좌) 이하

제5조(재임용 자격 및 절차) ① 대학(원)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4월말 또는 10월말)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임용대상자로부터 전임교원 재임용심사신청/포기서[별표 2]를 접수한다.

② 재임용 대상교원의 실적평가는 재임용 예정 4개월(4월말 또는 10월말)전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아래의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총장이 결정한다.

1. 교양 또는 외국어 강의 담당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충족하여야 함

- 가. 임용계약서에 별도의 재임용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 다만, 임용계약서에 별도의 재임용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학기 강의평가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나. [별표 4] 대학(원) 교원심사평정표의 평정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일 것
2. 전공 강의를 담당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임용계약서에 별도의 재임용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
- 다만, 임용계약서에 별도의 재임용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1) 「전임교원 임용규정」 [별표 5]의 재임용 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본조 제3항의 절차를 거친 소속대학(원)의 재임용 관련 내규가 있는 경우 이를 충족
- 2) 본조 제3항의 절차를 거친 소속대학(원)의 강화된 재임용 내규가 없는 경우에는 「전임교원 임용 규정」 [별표 5]의 재임용 기준을 충족
- 나. [별표 5] 교원심사평정표의 평정점수가 평균 70점 이상
- ③ 대학(원)장은 재적교원 2/3 이상의 동의하에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된 재임용 내규를 시행할 수 있다.
- ④ 재임용 심사를 위한 평가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학(원) : 소속 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대학원은 부대학원장), 대학(원)장이 지명한 피평가자와 동일학과(전공)의 상위 직급교원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단, 임상계열의 경우 진료과장, 진료부장, 해당병원장, 경희의료원장 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의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2. 행정부서 : 소속 부서장, 부서장이 지명한 피평가자와 동일학과(전공)의 상위 직급 교원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 ⑤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재임용에 관한 절차는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5장 재임용에 따른다.

- 제6조(승진심사 신청자격 및 절차)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
- ② 승진심사 대상자는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직급별 최소승진소요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 ③ 승진심사 대상자의 실적평가는 승진예정일 4개월(4월말 또는 10월말)전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아래의 승진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1. 임용계약서에 별도의 승진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임용계약서에 별도의 승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 「전임교원 임용규정」 [별표 5]의 승진 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본조 제4항의 절차를 거친 소속 대학(원)의 승진 관련 내규가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 함
 - 나. 본 조 제4항의 절차를 거친 소속 대학(원)의 강화된 승진 내규가 없는 경우에는 「전임교원 임용규정」 [별표 5]의 승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 [별표 5]의 대학(원)교원심사평정표의 평정점수가 평균 80점 이상
- ④ 대학(원)장은 재적교원 2/3 이상의 동의하에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된 승진내규를 시행할 수 있다.
- ⑤ 대학(원)장 및 부서장은 승진심사 대상자로부터 차기 승진예정일 4개월(4월말 또는 10월말)전까지 전임교원

승진심사 신청/포기서[별표 3]를 접수한다.

⑥ 승진심사를 위한 평가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학(원) : 소속 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대학원은 부대학원장), 대학(원)장이 지명한 피평가자와 동일학과(전공)의 상위 직급교원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단, 임상계열의 경우 진료과장, 진료부장, 해당병원장, 경희의료원장 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의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2. 행정부서 : 소속 부서장, 부서장이 지명한 피평가자와 동일학과(전공)의 상위 직급 교원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⑦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승진에 관한 절차는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3장 승진임용에 따른다.

제7조(연구실적 인정기준) ① 연구실적은 인쇄출판된 실적물을 기준으로 하되, 게재확정된 연구실적의 인정여부는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해당 연구실적은 차기 승진 및 재임용 심사 시 중복인정하지 아니하며, 연구실적의 심사기준은 「전임교원 임용규정」 [별표 5]의 연구실적 기준에 따른다.

② 각 계열별 연평균 외부 수주 연구비의 논문편수 환산은 「전임교원 임용규정」 [별표 5]의 논문 편수 산정방법에 따른다.

③ 임상진료실적이 탁월한 교원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진료실적을 승진 및 재임용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임상진료실적의 심사기준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에 따른다.

④ 타 대학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신규채용된 교원의 경우, 본교 임용 이후의 연구실적부터 인정한다.

⑤ 휴직교원이 휴직기간 중 국내외에서 행한 전공 및 담당과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와 재임용 심사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행한 연구실적을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업적평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업적평가는 「교수업적 평가규정」을 따른다

제9조(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특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교원인사기본규정」 제6조(연구년), 제11조(교원의 창업), 제17조(명예퇴직) 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된 자들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트랙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보칙)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이전에 임용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본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재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본 시행세칙 시행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다음의 재임용 기준을 차기 재임용심사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1. 내국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3개학기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별표 7] 대학교원심사평정표(내국인 비정년트랙-승진/재임용)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2. 외국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3개학기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별표 8] 대학교원심사평정표(외국인 비정년트랙-승진/재임용)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② 제7조(승진 및 그 절차)에도 불구하고, 본 시행세칙 시행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다음의 승진임용 기준을 차기 승진임용심사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1. 내국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연구실적이 전임교원임용규정 [별표 2] 승진기준의 25% 이상이고 [별표 7] 대학교원심사평정표(내국인 비정년트랙-승진/재임용)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2. 외국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최근 4개 학기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이고 [별표 8] 대학교원심사평정표(외국인 비정년트랙-승진/재임용)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 ③ 본 시행세칙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내국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제10조 제2항의 기산일은 전임교원임용규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08년 9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트랙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게 1회에 한하여 트랙전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신규임용 후 4년 경과한 때부터 정년트랙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5]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트랙전환심사 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소속 대학(원)장은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는 사항을 근거로 하여 트랙전환 여부를 심사한다.

1. 전공(학과) 재적교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외)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자
2. 영어강의 가능 여부에 따라 [별표 1] '트랙 전환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최근4년) 기준'을 충족한 자(다

만,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가 학문적 특성 상 영어강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외국인 교원의 경우에는 영어강의 불가능자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기준을 적용함)

3. 영어강의 가능자의 경우, 영어강의 공개발표에 근거하여 해당 대학(원)인사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교내 교수(외국인교원 포함) 5명의 심사위원이 [별지 6] 트랙전환 심사대상자 영어강의능력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영어 강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자
 4.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 38조에 의한 평가자 구성 및 평가방법에 따라 [별지 4] 대학(원) 교원심사평정 표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5. 박사학위 소지자(다만, 대학(원)인사소위원회가 박사학위의 소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
- ④ 해당 대학(원)장은 제2항의 심사를 완료한 후,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 ⑤ 교원인사위원회의 트랙전환 심의를 거쳐 총장은 당해 교원의 트랙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재임용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3조(트랙전환 후 승진·재임용 및 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정년트랙으로 트랙전환한 경우,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처우한다.

- ② 승진, 재임용 및 조기정년보장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전임교원 임용규정」 [별표 7], [별표 8] 을 적용한다.
- ③ 승진, 재임용 및 조기정년보장의 평가 및 그 절차는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 ④ 승진에 필요한 최소승진소요기간과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트랙 전환과 승진심사를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9.2.28. 이전에 임용(신규임용, 승진, 재임용)된 교원이 승진 심사에서 탈락 혹은 승진심사를 포기하여 승진이 유예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직급별 최초 승진예정일이 2019.3.1. 이후인 경우 최초 승진예정일로부터 3년간 「전임교원 임용규정」 [별표 4]를 적용하고, 이후로는 「전임교원 임용규정」 [별표 5]를 적용함. 단, 임용계약서 혹은 소속 대학(원)의 내규로 강화된 승진기준이 있는 경우 본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다.
2. 직급별 최초 승진예정일이 2019.2.28. 이전인 경우 2022.2.28.까지 「전임교원 임용규정」 [별표 4]를 적용하고, 이후로는 「전임교원 임용규정」 [별표 5]를 적용함. 단, 임용계약서 혹은 소속 대학(원)의 내규로 강화된 승진기준이 있는 경우 본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다.
- 3.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트랙전환 후 승진·재임용 및 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소속 대학(원)장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는 사항을 근거로 하여 트랙전환 여부를 심사한다.

1. 전공(학과) 재적교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2. 외국어 강의 가능 여부에 따라 [별표 1] '트랙 전환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최근4년) 기준'을 충족한 자 (다만,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가 학문적 특성 상 외국어 강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외국인 교원의 경우에는 외국어 강의 불가능자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기준을 적용함)
 3. 외국어 강의 가능자의 경우, 외국어 강의 공개발표에 근거하여 해당 대학(원)인사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교내 교수(외국인교원 포함) 5명의 심사위원이 [별표7] 트랙전환 심사대상자 외국어 강의 능력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외국어 강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자
 4. 본 규정 제5조 또는 제6조의 평가자 구성 및 평가 방법에 따라 [별표5] 대학(원) 교원심사평정표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5. 박사학위 소지자(다만, 대학(원)인사소위원회가 박사학위의 소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
-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트랙전환하는 경우 트랙전환 후 승진, 재임용 및 조기정년보장에 필요한 최저연구실적 기준은 「전임교원 임용규정」을 적용하며, 기준에 적용되는 신규임용일은 트랙전환일자로 한다.
- ③ 승진, 재임용 및 조기정년보장의 평가 및 그 절차는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 ④ 승진에 필요한 최소승진소요기간과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트랙 전환과 승진심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트랙전환 심사 후 승진심사를 진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조교수(A) 교원의 경우 조교수로 직급을 변경하며,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조교수(B) 교원의 경우는 승진임용 시 조교수로 직급을 변경한다.

②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조교수(A) 및 조교수(B)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은 종전 규정의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별표 1] 트랙전환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최근4년) 기준

트랙전환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최근4년) 기준

계열구분	필요 연구실적		비 고
	외국어강의 가능자	외국어강의 불가능자	
인문·사회·체육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7.5편 이상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10편 이상	- 논문 편수의 30%는 산학협력단 명의 특허등록, 외부수주연구비로 대체 가능 - SSCI, A&HCI논문으로 100% 대체 가능
예술·창작·무용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6편 이상 (50점 이상 작품활동으로 1,200점으로 대체 가능)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8편 이상 (50점 이상 작품활동으로 1,600점으로 대체 가능)	
자연 A	SCI 6편 이상	SCI 8편 이상	- 논문편수의 30%는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산학협력단 명의 특허등록·외부수주연구비로 대체 가능
자연 B	SCI 4.5편 이상	SCI 6편 이상	
임상 의·치·한의	SCI 4.5편 이상	SCI 6편 이상	- 논문편수의 30%는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산학협력단 명의특허등록·외부수주연구비로 대체 가능 - 논문편수는 별도의 산정방법을 적용함.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는 한국연구재단의 공표자료에 의함

<논문 편수 산정 방법>

- A&HCI 및 SSCI 1편은 한국연구재단등재지 6편으로 계산 / SCIE 1편은 SCI의 0.8편으로 계산
- Nature·Cell·Science 및 Impact Factor 20 이상 국제학술지 논문 1편은 SCI 10편으로 계산
- SCI 1편은 한국연구재단등재지 3편으로 계산함.
- SCIE 1편은 SCI 0.8편(240점)으로 인정함
- 본교 산학협력단 명의 국내 특허 등록은 SCI의 1/2편, 국제 특허 등록은 2편으로 계산
(1/n 적용)

- 연평균 외부수주연구비(연평균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자연 A,B, 임상 계열 : 수주금액/1억5천만원 × SCI 1편(수주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인문·사회·체육·예술·창작 : 수주금액/1억원 × 국내1급 3편(수주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기타 내용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2015.1.1.시행) [별표1], [별표2],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함

[별표 2] 전임교원 재임용심사 신청서

전임교원 재임용심사 신청서
APPLICATION FOR RE-APPOINTMENT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소 속 DEPARTMENT			
	현 직급 CURRENT POSITION		신규임용일 DATE OF INITIAL APPOINTMENT	
	성 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트랙구분 TRACK CLASSIFICATION	정년 · 비정년 (TENURE · NON-TENURE)	
임용사항 APPOINTMENT INFORMATION	현 임용기간 CURRENT APPOINTMENT PERIOD		재임용 기준 RE-APPOINTMENT CRITERIA	<input type="checkbox"/> 별표 4 <input type="checkbox"/> 별표 5 <input type="checkbox"/> 별표 6
	평가 대상기간 EVALUATION PERIOD			
	재임용 대상기간 RE-APPOINTMENT PERIOD			
200 년 월 일부 전임교원 재임용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I hereby submit this re-appointment application for the term beginning as of <u>DATE</u>				
일 시(DATE) : 20 . . .				
신청인(APPLICANT) : _____ (서명/SIGNATURE)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위원장 귀하

To the Chairman of the Faculty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별표 3] 전임교원 승진심사 신청/포기서

전임교원 승진심사 신청/포기서
APPLICATION FOR PROMOTION / RENUNCIATION OF PROMOTION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소 속 DEPARTMENT			
	현 직급 CURRENT POSITION		신규임용일 DATE OF INITIAL APPOINTMENT	
	성 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트랙구분 TRACK CLASSIFICATION	정년 · 비정년 (TENURE · NON-TENURE)	
임용사항 APPOINTMENT INFORMATION	연구실적 평가 대상기간 EVALUATION PERIOD		승진기준 PROMOTION CRITERIA	<input type="checkbox"/> 별표 4 <input type="checkbox"/> 별표 5 <input type="checkbox"/> 별표 6
	평가 대상기간 내 휴직 및 징계기간 LEAVES OR DISCIPLINARY PERIOD DURING THE EVALUATION PERIOD			

※ 해당란에 √ 표시 하시오.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box.

20 년 월 일부 전임교원 승진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a promotion for the term beginning as of DATE
20 년 월 일부 전임교원 승진심사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a renunciation of promotion for the term beginning as of DATE

일 시 (DATE) : 200 . . .

신청인(APPLICANT) : (서명/SIGNATURE)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위원장 귀하

To the Chairman of the Faculty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별표 4] 대학(원) 교원심사평정표

대학(원) 교원심사평정표

(교양 또는 외국어강의 담당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 재임용)

피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 (인)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가점수
1. 윤리성	30	1-1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1-2 인간관계의 원만성 1-3 교수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타 업무 종사 관계	소계
2. 강의평가 및 교육내용	60	2-1 강의평가점수 2-2 강의콘텐츠 개발 및 신교육기법 사용 (강의진행 방법과 개선노력 연구) 2-3 강의계획서 2-4 수업의 충실성(휴·결강여부 등)	소계
3. 학생지도	5	3 면담 실적	소계
4. 학내·외 봉사활동	5	4 학내행사 참여	소계
합 계	100	총 계	

종합의견	
------	--

- * 각 평가내용의 소계는 각 평가내용 평가점수의 합계이며, 평가항목의 배점점수를 상회할 수 없음
- * 최소기준 : 승진 시 80점, 재임용 시 70점 이상

[별표 5] 대학(원) 교원심사평정표(전공강의담당-승진 재임용/ 부교수승진/ 트랙전환)

대학(원) 교원심사평정표
(승진 / 전공강의담당-재임용/ 트랙전환)

피평가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평 가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점수
1. 윤리성 (10점)				
	소계			
2. 강의평가 및 교육내용 (30점)				
	소계			
3. 학생지도 (10점)				
	소계			
4. 학내· 외 봉사활동 (10점)				
	소계			
5. 연구실적의 정성평가 (40점) *임상진료실적 으로 20점까지 반영 가능*				
	소계			
합 계	총 계			

종합의견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위원장 귀하	

* 평가항목별 평가내용과 세부 배점기준은 해당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 확정·시행함

[별표 6]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트랙전환심사 신청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트랙전환심사 신청서

APPLICATION FOR TRANSFER FROM NON-TENURE TRACK TO TENURE-TRACK FACULTY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소 속 DEPARTMENT			
	현 직급 CURRENT POSITION			
	성 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외국어 강의 가능여부 ABILITY TO PERFORM LECTURE IN FOREIGN LANGUAGE	가능 () POSSIBLE	불가능 () IMPOSSIBLE	
임용사항 APPOINTMENT INFORMATION	신규임용일 DATE OF INITIAL APPOINTMENT			
	현 직급 승진일 DATE OF PROMOTION TO CURRENT POSITION			
	현 임용기간 CURRENT APPOINTMENT PERIOD			
	평가 대상기간 EVALUATION PERIOD			
<p>20 년 월 일부 전임교원 트랙전환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a transferring to tenure-track for the term beginning as of DATE</p> <p>일 시(DATE) : 20 . . .</p> <p>신청인(APPLICANT) : (서명/SIGNATURE)</p>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위원장 귀하

To the Chairman of the Faculty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별표 7] 트랙전환 심사대상자 외국어 강의 능력 평가보고서

트랙전환 심사대상자 외국어 강의 능력 평가보고서
 EVALUATION FORM FOR TRANSFER TO TENURE-TRACK FACULTY
 (EVALUATION OF ABILITY TO PERFORM LECTURE IN FOREIGN LANGUAGE)

피평가자 APPLICANT	소 속 : DEPARTMENT	평 가 자 EVALUATOR	소 속 : DEPARTMENT
	직 급 : POSITION		직 위 : POSITION
	성 명 : FULL NAME		성 명 : (인) FULL NAME SIGNATURE

1. 외국어 강의능력 ABILITY TO PERFORM LECTURE IN FOREIGN LANGUAGE	① 외국어 강의 가능 POSSIBLE	()	② 외국어 강의 불가능 IMPOSSIBLE	()
	80% 이상 MORE THAN 80%		60% 이하 LESS THAN 60%	
2. 종합의견 OVERALL COMMENTS (점수부여와 관계 없이 평가자의 평가소견을 기재) (PLEASE WRITE YOUR EVALUATION OPINION REGARDLESS OF THE POINTS GIVEN)				

※ 교수채용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비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his form must be submitted sealed.

대학(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To the Chairman of the Faculty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